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윤준병 · 임미애
전용기 · 이상식 · 황명선
이수진 · 강준현 · 한정애
문대림 · 서미화 · 오세희
전종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,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.

특히 하천의 비탈면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과 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,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홍수 방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.

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희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, 홍수 방어,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·관

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.

주요내용

- 가. 하천의 비탈면 등 유희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3조제10항).
- 나.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, 홍수 시 유수소통, 하천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(안 제33조제10항).
- 다.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시 별도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(안 제33조제11항).
- 라. 홍수·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·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제12항).
- 마. 시설로 인해 하천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제13항).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비탈면, 제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구역 내 유희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하천의 유수 소통 및 홍수 방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
2.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
3. 하천시설의 점검·보수 및 유지관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
4. 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
5. 홍수·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·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할 것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⑪ 제10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은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, 사면의 안정성, 홍수 시 유수의 흐름,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재해 발생 시 대응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⑫ 하천관리청은 제10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하천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

1. 시설의 구조 및 기초공법에 관한 사항
2. 사면 및 제방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시설의 점검·보수 및 유지관리 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
4. 홍수 또는 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·이동 등에 관한 사항
5. 시설의 존치기간 및 사용 후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⑬ 제10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하천의 유수 소통, 홍수 방어,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 또는 유지·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제33조제10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① ~ ⑨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<u>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비탈면, 제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구역 내 유희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</u> <u>1. 하천의 유수 소통 및 홍수방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</u> <u>2.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</u> <u>3. 하천시설의 점검·보수 및 유지관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</u> <u>4. 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</u> <u>5. 홍수·집중호우 등 재해 발</u>

<신 설>

<신 설>

생 시 시설의 철거·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할 것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⑪ 제10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의 설치·운영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은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, 사면의 안정성, 홍수 시 유수의 흐름,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재해 발생 시 대응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⑫ 하천관리청은 제10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하천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.

1. 시설의 구조 및 기초공법에 관한 사항

2. 사면 및 제방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

3. 시설의 점검·보수 및 유지관리 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

4. 홍수 또는 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·이동 등에 관한

<u><신 설></u>	<u>사항</u> <u>5. 시설의 존치기간 및 사용 후</u> <u>원상회복에 관한 사항</u> <u>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사항</u> <u>⑬ 제10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</u> <u>이 하천의 유수 소통, 홍수 방</u> <u>어,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</u> <u>또는 유지·관리에 지장을 주</u> <u>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</u> <u>에는 하천관리청은 해당 시설</u> <u>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허가를</u> <u>취소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</u> <u>을 명할 수 있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